

한국의 관·검사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김 지 현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임 영 자

目 次

| | |
|-----------------------|----------|
| I. 서 론 | (2) 색 상 |
| II. 사법제도의 변천 | (3) 소 재 |
| III. 법복의 변천 | IV. 결 론 |
| 1. 문헌을 통한 법복의 법규 및 특징 | 참고문헌 |
| 2. 실물을 통한 법복의 법규 및 특징 | ABSTRACT |
| (1) 형 태 | |

I. 서 론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사와 검사들이 재판소에서 입는 정복(正服)을 법복(法服)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과거 고유의 대례복(大禮服)을 지칭하는 명칭과 동일하다. 법규상에 나오는 명칭은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의 맞춤법을 따르지 않은 문장도 있다.

본 논문은 우리 나라에 사법 제도가 도입된지 100년이 된 시점에서, 사법계의 대표적인 의복인 법복에 대한 논문이 없고, 그에 관한 정리된 자료의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어 쓰게 되었다.

연구 범위는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제정된 법규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규까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판사의 법복의 형태와 검사의 법복의 형태가 동일하고 장식부분에서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를 연구하는 점에서 별

다른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실물 5벌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복이 법률로 정해지는 의복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규칙은 우리 나라 총무처 관보를 통해 찾아 볼 수 있었고, 실물은 대법원 도서관 내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부족한 자료나마 시대별로 정리함으로써 현대 우리 나라의 관복에 대한 정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사법제도의 변천

사법제도(司法制度)란 국가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으로 나누고, 각기 담당기관을 분리, 독립시켜 서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대국가의 사법작용의 제도¹⁾를 말한다.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웅진출판사, 1991. p.833.

사법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조선시대 사법업무는 형조, 사헌부, 한성부, 의금부 등에서 담당하였다.

우리 나라 역사상 '재판과 행정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의 기본원칙은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최초로 나타났다. 갑오개혁 초기에 재판의 독립과 신분제의 철폐 등 기본적인 법령들이 공포된 이후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비로소 이땅에 근대적 재판기관이 설치되기에 이른 것이다.²⁾

일본의 우리 나라에 대한 국권 침탈은 재판제도의 운영이 과거와 유사하게 문란해지는 것을 빌미로 이용하면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07년에는 재판제도의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재판소구성법이 새로 제정되어 일본의 재판제도와 동일한 심급제로 재판소가 개편되었고, 일본인이 곧바로 이땅의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기 시작하였다. 1909년에는 사법권을 완전히 일제에 의해 강탈당하고 식민지적 재판제도가 이땅에 자리잡게 되었다.

외형상의 법치주의 배후에는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본 내에는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다수 제정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이 되었으나, 국토가 분단되고 북위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총독부 재판소의 일본인 판사와 검사 전원을 일제히 면직시키고 한국인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여 재판소를 구성하는 한편, 일제 식민지시기의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등 악법과 경찰 사법권을 폐지하는 등 사법제도의 재건을 착수하였다.³⁾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어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하급 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이 공포되었다.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하여 지방법원에 지원을 두었고, 3급3심제가 확립되었다.

6.25 도중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형사소송에 관하여 단심제의 특례가 시행되었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다.

1953년 3월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규칙」이 공포되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법복이 마련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후 대법원과 서울 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이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복귀하였고, 같은 해 9월과 다음해 9월에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공포되었다. 1954년 11월 헌법이 다시 개정되어 군법회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가 설치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대법원장독단이 임명되었고, 6월 5일 헌법의 효력을 제한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되어 대법관직이 폐지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법원행정의 대강을 지시 통제하게 되었다.

1966년 1월에는 「법관복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어 법복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특별선언을 통하여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로 하여금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며칠 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10월 유신'이라고 명명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총격을 받고 서거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는 그 막을 내리고 말았다.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8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곧이어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및 대통령 간선선거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여 같은 해 10월 27일 공포시행되었다.

2) 법원사편찬위원회,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p.3.

3) 법원사편찬위원회,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p.4.

6.29특별선언 이후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9월 21일 이를 공고하였고, 곧 이어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3.1%에 이르는 압도적 찬성률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민사조정법과 가사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이를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게 하였다.

새로운 사법제도를 연구 창안하여 제안하도록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사법개혁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94년 7월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중 개정법률 등 6개 사법제도개혁 관련 법률안이 통과 공포되어 바야흐로 사법부가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다.⁴⁾

Ⅲ. 법복의 변천

1. 문헌을 통한 법복의 범규 및 특징

조선시대 사법업무 담당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중 지도자를 법사당상(法司堂上)이라고 하는데, 형조판서(刑曹判書, 정2품), 참판(參判, 종2품), 참의(參議, 종3품),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종2품),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 정2품), 좌윤(左尹, 종2품), 우윤(右尹, 정2품), 의금부(義禁府)의 판사(判事, 종1품), 지사(知事, 정2품), 동지사(同知事, 종2품)등이다.⁵⁾

관복(官服)이란 벼슬아치의 정복(正服)으로 관에서 지급한 제복(制服), 상복(常服), 공복(公服), 용복(戎服), 군복(軍服) 등을 모두 일컫는 말이며 좁은 뜻으로는 공복, 상복을 뜻한다. 관복에는 관모(冠帽)와 대(帶), 화(靴)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을 갖추어야 각 품급에 따라 포와 색이나

부속품의 재료, 문양 등을 달리하였다.

갑오경장때 간소화가 시도되었다. 고종 32년에 문관의 복장식(服裝式)이 반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조복(朝服), 제복(祭服)은 구습대로 착용하고 공복(公服)이란 단어가 없어지고 대례복은 흑단령(黑團領), 사모(紗帽), 품대(品帶), 화자(靴子)를 착용하고, 소례복은 흑반령(黑盤領), 착수포(窄袖袍), 사모(紗帽), 속대(束帶), 화자(靴子)로 진견시(進見時)에 착용하여도 좋다고 하였다.⁶⁾ 광무 4년(1900년) 4월에 관복이 양복으로 변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관복은 흉배를 달아 벼슬의 품계(品階)를 구별하였는데, 문무당상관(文武堂上官)의 화양(花樣)을 보면 대군(大君)은 기린(麒麟), 도통사(都統使)는 사자(獅子), 제군(諸君)은 백택(白澤), 문관일품(文官一品)은 공작(孔雀), 이품(二品)은 운안(雲雁), 삼품(三品)은 백한(白鵠)으로 하고, 무관(武官) 일, 이품(一, 二品)은 호표(虎豹), 삼품(三品)은 용표(熊豹), 대사헌(大司憲)은 해치(獬豸)로 했다. 영조(英祖) 10年 12월에 문관(文官) 당상관(堂上官)은 운학(雲鶴)을, 당하관(堂下官)은 백안(白鴈)을, 무관(武官)은 경국대전(國大典)에 준하여 사용케 하였다. 고종(高宗) 8年 2월에 문관(文官) 당상관(堂上官)은 쌍학(雙鶴), 당하관(堂下官)은 단학(單鶴)으로, 무관(武官) 당상관(堂上官)은 쌍호(雙虎), 당하관(堂下官)은 단호(單虎)로 흉배문양(胸背文樣)이 변천되었다.

각 시대에 따라 법사당상(法司堂上)의 흉배의 변천은 아래의 표와 같다.

4) 법원사편찬위원회,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웅진출판사, 1991.

6) 임재영, 조선시대의 백관복,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79. p.10.

<표 1> 직분에 따른 흉배의 형태

| 직 분 | 시 대 | | 영 조 | 고 종 |
|--------------|--------|------------|------------|------------|
| | 조선초기 | 영 조 | | |
| 형조 (刑曹) | 판서(判書) | 호표 (虎豹) | 호표 (虎豹) | 쌍호 (雙虎) |
| | 참판(參判) | | | |
| | 참의(參議) | 웅표(熊豹) | 웅표(熊豹) | |
| 한성부 (漢城府) | 판윤(判尹) | 운안 (雲鴈) | 운학 (雲鶴) | 쌍학 (雙鶴) |
| | 좌윤(左尹) | | | |
| | 우윤(右尹) | | | |

그리고 이것은 조선말기(朝鮮末期)까지 유지된 후 군복(軍服)이 신식군복(新式軍服)으로 개혁되면서 무관의 흉배(胸背)는 폐지되었고, 문관(文官)의 흉배(胸背)는 광무(光武) 4年(1900年) 관복(官服)이 구미식(歐美式)으로 개혁된 후 자연히 폐지되었다.

1895년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 공포될 때에는 법복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한 것이 없었다. 그 후 1906년 3월 21일에 공포된 「평리원 이하 각 재판소 사법관 급 주사 재판정복 규칙」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법복이 마련되었다. 재판장, 판사와 시보는 자색반령흑색착수포(紫色盤領黑色窄袖袍)에 자색속대(紫色束帶)와 금제방뉴(金製方紐)를

하고 흑색화[黑靴子]를 신었으며 머리에는 오사모(烏紗帽)를 썼다. 검사와 검사시보는 주황색반령흑색착수포(朱黃色盤領黑色窄袖袍)를 입고 홍색속대(紅色束帶)를 하며 은제방뉴(銀製方紐)에 흑색화를 신었고 머리에 오사모를 썼다. 주사는 녹색반령흑색착수포(綠色盤領黑色窄袖袍)에 흑립(黑笠)을 쓰고 녹색속대(綠色束帶)에 흑각방뉴(黑角方紐)와 흑혜(黑鞋)를 신었다.

일제의 강점 이후에도 1906년 3월 21일의 「평리원 이하 각 재판소 사법관 및 주사 재판정복규칙」을 따르다가, 1911년 5월 31일 칙령 제176호로 총독부 본부 직원 및 소속 관서 직원들에게 착용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복제를 따르게 되었는데, 이 복제는 일제의 무단통치를 상징하는 칼을 반드시 차게 한 것으로서 8년간 시행된 후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8월19일 칙령 제403호에 의해 8월 30일자로 폐지되었다.

약 1년 후인 1920년 7월 26일 칙령 제222호 「조선총독부 재판소 직원의 복제에 관한 건」을 반포하여 조선총독부 판사검사 및 재판소 서기의 법복 제도를 일본재판소의 서기와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판사검사 및 재판소서기의 제복 규정표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판사, 검사, 재판소서기의 제복표

| 제복 | 재판소 | | 고등법원 | 복심법원 | 지방법원 (지청) | 비 고 |
|-----|-----|----------|----------|----------|--------------|------------------------------------|
| | 服 色 | 裝 飾 | 후 색 | 후 색 | 후 색 | |
| 상 의 | 服 色 | 裝 飾 | 후 색 | 후 색 | 후 색 | 판사는 紫色꽃, 검사는 緋色꽃, 재판소 서기는 綠色의 唐草무늬 |
| 모 자 | 色 | 裝 飾 | 후 색 | 후 색 | 후 색 | |
| | 裝 飾 | 구름(雲) 무늬 | 구름(雲) 무늬 | 구름(雲) 무늬 | 구름(雲) 무늬 | |

조선총독부 및 그 소속 관서 직원에 대해서는 1911년 6월 9일 부령 제 69호로 상의 소매깃 부분 양쪽 앞단에 금장을 달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재판소 역시 마찬가지로 모양은 오동 나무 잎모양으로 같으나 계급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였다. 즉 판

사는 잎사귀가 자색이고, 검사는 비색, 사법관 시보는 은색, 기타 서기장·통역관·서기·통역생 등 법원 일반직은 녹색으로 규정하였다.

(그림 1)는 부령 제69호에 나오는 조선총독부 재판소 직원이 달았던 오동나무잎 모양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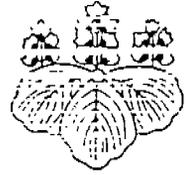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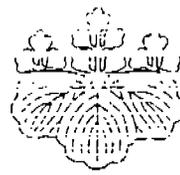
림 2)은 일본에서 옛부터 쓰였던 오동나무 문장(紋章)인데 부령제69호에 나오는 오동나무잎 모양과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 오동나무잎 모양은 일본에서 무사 가문에서

쓰이던 문장인데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 통제하는 문장중의 하나로 아무나 착용할 수 없고 착용할 수 있는 사람은 승자부터 먼저 사용하였다⁷⁾고 한다.



(그림 1) 조성총독부 재판소 직원의 금장



(그림 2) 일본에서 쓰였던 오동나무 문장

8.15해방으로 일제의 강권통치를 벗어나서 재판소도 우리나라 사람으로 구성되어 우리말로 재판을 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고유한 법복이 없었던 관계로 당시의 판사들은 한복을 입거나 또는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오는 것이 통상적이었다.⁸⁾

해방 이후 1953년 3월 5일 대법원규칙 제 12호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규칙」을 마련하여 같은 날 시행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법복제도의 시발이다. 이때의 법복은 앞섶에 5개의 숨김단추가 있고, 가슴에는 직경 20cm의 무궁화 무늬 속에 직경 10cm의 입체 무궁화가 그려져 있었으며, 법모에는 직경 5cm의 무궁화 무늬 속에 태극장이 자리잡았다. 무궁화 장식 색깔은 판사는 백색, 검사는 황색, 변호사는 자색으로 각각 구분하였고 법원서기복에는 무궁화 무늬가 없었다.⁹⁾ 이것으로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는 무궁화의 장식색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거추장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져서 1966년 1월 15일 대법원규칙 제268호로 「법관복에 관한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같은 해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과 동시에 종전의 규칙을 폐지하였다. 종전 법복에

있던 무궁화 무늬를 없애고 앞섶의 숨김단추를 5개에서 3개로 줄였으며, 법모를 착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삭제한 점이 특징적인 변화이다. 또한 검은색 바탕에 2cm간격의 바른쪽으로 비긴 흰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매도록 하였다.

1973년 4월 4일 대법원규칙 제516호로 「법관 및 법원주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면서 종전 「법관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68호)을 폐지하였다. 새로운 대법원 규칙은 법관은 물론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가 착용할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역에 관한 사항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규정한 것이었다. 이 규칙에 의하더라도 법관의 법복에 대하여는 종전 「법관복에 관한 규칙」과 비교하여 그 제식과 모양에 있어서 사실상 달라진 점은 없었다. 여자 법관이나 여자 참여주사의 제직 때문에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11일 대법원규칙 제516호를 일부 개정하여 여자 법관 및 법원주사 등의 법복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¹⁰⁾ 여자 법관 및 여자 법원주사 등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그 대신 흰색 블라우스에 직경

7)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國史大辭典 第十三卷, 吉川弘文館, 1992. p.894.

8) 법원사편찬위원회,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p.210.

9) 법원사편찬위원회,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p.354.

10) 법원사편찬위원회,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p.748.

1cm의 검은 비로도 줄을 매도록 하였다.

1986년 8월 23일 대법원규칙 제 942호로 「법관 및 법원주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법정에서 착용하여야 할 복장을 다소 간소화 하였다. 넥타이와 검은 비로도줄에 대한 제한을 모두 철폐하고 다만 남자법관 및 남자 사무관 등에 한하여 색깔 및 무늬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넥타이만을 매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남자 법관이 법복을 착용할 때 별도의 정해진 법정용 넥타이를 매던 규정이 1986년 폐지된지 6년만에 다시 부활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방침은 법복 착용시 자유롭게 넥타이를 매도록 허용한 것이 법정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고 법정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늬가 없는 검은 자주색 넥타이를 매도록 결정하였다.

<표 3> 검사의 법관복에 대한 변천Ⅱ(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 법령 | 부제 | 제 복 표 | 변천 및 참고사항 |
|--|----|---|--|
|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규칙 (대법원 규칙 제12호, 1953년) | 법복 | 服色 | 흑 또는 흑감색의 서지 또는 견직물 |
| | | 裝飾 | 전흉(前胸, 앞가슴) 중앙부 폭에서 5cm 하위(下位) 직경 20cm의 무궁화문(無窮花文) 속에 직경 10cm 입체무궁화 |
| | | 製式 | 선깃에 한줄 단추 5개를 숨김단추로 함. 길이는 목에서 구두굽 약 24cm 상부(上部)의 점소매길이는 손목과절에서 1.5cm 상부(上部)의 점동(胴, 몸통) 좌우 측면에 주머니 구(口, 입구) |
| | 법도 | 色 | 흑 또는 흑감색의 서지 또는 견직물 |
| | | 帽章 | 직경 5cm 무궁화문 속에 태극장(太極章) |
| | | | 제식무(製式無), 전자전면(前疵前面, 앞)에 모장(帽章, 모자에 붙이는 일정한 표지), 후면에 리본 장식하고 고무로 신축키로 함 |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4호, 1966년) | 제식 | 규격 | 1. 앞「단추」는 3개의 「숨김단추」로 한다. 2. 「길이」는 구두 「굽」에서 위로 20cm되는 곳까지로 한다. 3. 「소매길이」는 손목 관절까지로 한다. 4. 「소매통」은 안으로 20cm길이의 「커우스」를 붙이고 겉으로 덮이게 한다. 5. 앞면 양쪽에 각각 10cm내외씩의 간격을 두고 4cm내외의 큰 「주름」 2개씩을 잡고 「요-크」 뒷면과 양 어깨에는 잔 「주름」을 잡는다. |
| | | 장식 | 1. 자홍색 「레자」를 목둘레와 등중 「요-크」 중심선에 붙이고 「요-크」 끝에는 길이 4cm의 「고리」를 만들어 직경 2cm의 검은색 장식 「단추」로 눌러 붙인다. 2. 넥타이를 맨다. |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 5245호, 1970년) | | 종전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4호)」의 제식 중 규격 5항에 “큰 「주름」 2개씩을 잡고”를 “큰 「주름」을 잡고”로 변경함 | |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248호, 1982년) | | 종전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4호)」의 제식 중 장식 2항에 “다만, 여자검사는 부라우스에 직경 1cm의 검은색 비로도 줄을 맨다”를 추가함 | 여자검사 2명의 입관에 따라 여자검사는 비로도 줄을 매도록 조치 |

이제까지 살펴본 법복의 내용중 해방이후의 법규는 판사의 법복을 위주로 한 것이기에 검사에 법복에 대한 법규 및 특징을 다음의 <표 3>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2. 실물을 통한 법복의 특징

실물을 통해 본 법복은 형태면에서 크게 변하는 시기가 몇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면 법복을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물의 조사는 일제시대 법복 1벌, 1953년 이후의 법복과 범모 각 2벌, 1966년 이후의 법복과 범모 각 2벌이다. 이때 1953년 이후 법복 두벌 중 검정색 법복을 I로 하고, 흑감색 법복을 II로 하며, 1966년 이후의 법복 중 목둘레 레이스가 자주색인 것을 I로 하고, 목둘레 레이스가 붉은 색인 것을 II로 하였다. 이 5벌의 의복들을 형태, 색상, 소재면에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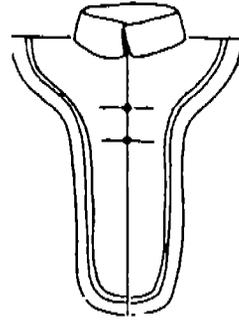
(1) 형태

1) 일제시대 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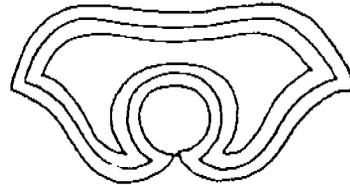
옷의 형태에서, 길은 전체 4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트여 있으며 옆선에는 주름이 겨드랑이 부분에서 아래단까지 주름폭 5.8cm로 2겹이 들어가 있다. 소매는 그 너비가 넓고 수구가 소매너비 전체와 같은 크기이다. 칼라는 스탠드칼라로 칼라끝은 목둘레선에서 사선으로 올라가 끝을 등갈게 굴렸다. 이 칼라를 고정시키기 위해 혹 단추 1개가 달려 있다.

앞 가슴부분과 양어깨부분 그리고 뒷 목둘레 부분에는 당초무늬가 흰비단실로 수놓여 있다. 칼라

에도 역시 수가 놓여 있다. 이렇게 뒷목둘레와 양어깨, 앞 가슴부분에 연결된 수의 모양은 청대 남자복식 중 다음 (그림 3)의 영의(領衣)¹¹⁾와 유사하다. 일제시대 법복과 비교해 볼 때 영의(領衣)의 칼라도 스탠드 칼라의 형태이므로 혹시 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또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청대 복식 중 피령(披領)¹²⁾이 있다. (그림 4)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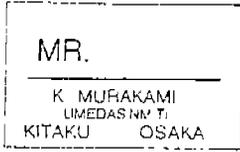
(그림 3) 영의(領衣) 전시도
(참조 : 중국복식사 p.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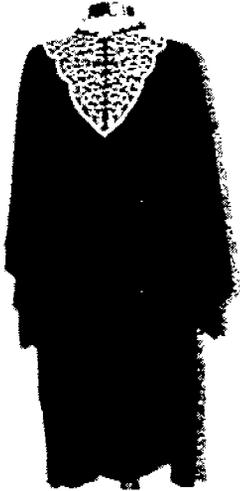
(그림 4) 피령(披領) 전시도
(참조 : 중국복식사 p.226)

법복 안쪽 등 부분에 라벨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 1) 영의(領衣) : 청대의 예복은 일반적으로 영(領)이 없으나, 입을 때 받드시 경령(硬領)을 달았다. 그 모양이 꼭 소려와 같았기 때문에 속칭, “牛舌領(牛舌領)”라고 하였고 아래는 포(布) 또는 주단(綢緞)으로 매듭짓고 가운데는 터서 단추로 매었다. 옷감은 여름에 사(紗), 겨울에는 가죽 혹은 용(絨)을 사용하였고 봄, 가을에는 호색단(湖色緞)을 사용하였다.
- 2) 피령(披領) : 이것은 목과 어깨에 두르며 꼭 능각(菱角)과 같았다. 뒷면에는 문채(紋彩)를 수놓고 관원들은 조복(朝服)으로 입었는데 겨울에는 석청색(石靑色), 혹은 자색의 초피(貂皮)를 사용하고 해룡(海龍)을 넣어 연(緣)을 수놓아 장식하였다. 여름에는 석청색을 사용하였고 편금연변(片金緣邊)을 더하였다.
- 3) 화매(華梅)저, 박성실·이수웅. 역, 중국복식사, 경춘사, 1992. p.225~227.



(그림 5) 일제시대 법복의 라벨



(그림 6) 일제시대 법복의 형태



(그림 7) 1953년이후 법복의 형태

2) 1953년이후 법복 I 과 1953년이후 법복 II
길은 전체 4폭과 양쪽의 무로 이루어 졌으며 앞
이 트여 있어 오른쪽으로 여며서 입는다.

소매는 그 너비가 넓어 마치 옛날 관복의 넓은

소매와 비슷하다. 또, 소매와 길이 연결되는 부분
중 겨드랑이 부분의 소매엔 2.5~4.5cm정도의 트
임이 있고 무의 겨드랑이와 연결되는 끝부분도 트
임이 있다. 칼라는 스탠드 칼라로 칼라 끝은 목돌
레션에서 직각으로 올라가 끝을 등글게 굴린 것으
로 1983년 중고등학교 교복 자율화 이전에 입었던
남자 교복의 칼라와 유사하다. 이 칼라를 고정시
키기 위해 1953년이후 법복 I 은 흑단추가 2개이
고, 1953년이후 법복 II 는 흑단추가 1개 달려 있었
다.

앞쪽 가슴부분 중앙에 꽃 모양의 수가 달려 있
다. 이 수의 색상이 황색인 것으로 보아 검사의 법
복임을 알 수 있다. 판사는 이 무궁화수의 색이 백
색이다. 1953년이후 법복 II 의 옷 안쪽 등 부분에
라벨이 있는데 이 라벨의 내용에는 성명, 호수
(中), 제작년월일(4293. 12. .), 제작회사(경모
산업주식회사) 등이 쓰여 있었다. (그림 6) 참조

| | |
|----------|-------------|
| 성 명 | |
| 호 수 | 中 호 |
| 제작년월일 | 4293. 12. . |
| 경모산업주식회사 | 근제 |

(그림 8) 1953년이후 법복 I 의 라벨

모자는 둘레가 52cm, 높이 13.5cm로 뒷 부분에
긴 끈이 있는데, 맴으로써 장식적인 기능을 더 했
다. 모자 앞쪽 중앙에는 꽃모양의 수 안에 태극 마
크가 작게 붙어 있었는데, 이 태극 마크의 모양을
만든 소재가 흥미로 왔다. 그것은 철사를 꼬아 긴
쇠불이를 휘어서 모양을 만든 것이다. 1953년이후
법복 I 의 모자 안쪽에 중(中)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자의 크기를 대(大)·중(中)
·소(小)로 나누어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1953
년이후 법복 II 의 모자는 안감을 누벼서 처리했고
안쪽에는 제조회사의 라벨이 붙어 있다. (그림 7)

Kyung Mo Co
MADE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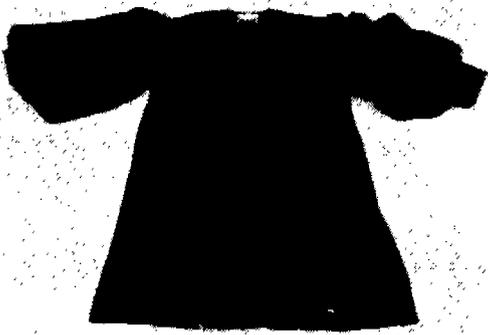
(그림 9) 법모의 라벨

3) 1966년 이후 법복 I 과 1966년 이후 법복 II 옷의 형태에 있어서 전체 길은 요오크 부분과 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요오크와 길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주름 4개가 있고, 앞은 트여있다.

소매는 길과 연결되는 부분에 2cm 간격으로 잔주름이 처리되어 있으며, 소매의 끝에 20cm의 커우스를 달았는데 이것은 소매의 길이가 길어서 그 안으로 숨어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칼라는 없고 뒤는 라운드네크라인이고, 앞은 V네크라인으로 V에서 약간 굴려준형이다. 이 목둘레선을 따라 자주색 레이스(1966년 이후 법복 II는 붉은색 레이스)가 달려있다. 레이스색으로 검사의 법복과 판사의 법복을 구별할 수 있다. 즉 검사의 법복은 자주색 레이스(법규상에는 자홍색이라 표기되어 있다)를 달고, 판사의 법복은 검은색 레이스를 달고 있다.

앞자락의 고정은 숨김단추로 하며, 어깨부분(요오크와 소매의 연결부분)과 뒤요오크 부분에 잔주름 처리된 곳은 옷감 안쪽에 심지를 넣어서 주름이 힘이 있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옷 안쪽에 긴 줄이 양쪽으로 있는데, 이것은 옷을 입었을 때 옷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에서 X자 형태로 묶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10) 1966년 이후 법복의 형태



(그림 11) 현재 법복의 형태

(2) 색 상

색상은 일제시대법복과 1953년 이후 법복 I, 1966년 이후 법복 I, II, 모두 검정색이다. 그러나 1953년 이후 법복 II는 흑감색인 것으로 보아 흑색과 흑감색이 혼용된 것을 알 수 있다.

(3) 소 재

일제시대 법복은 견직물로 보이는데, 이것은 왼쪽 옆선쪽에 태운 흔적으로 보아 천연 견섬유임을 알 수 있고, 옷감의 촉감과 광택으로도 견직물임을 알 수 있다

1953년 이후 법복의 법규상으로는 견질물이나 서지¹⁴⁾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실물의 옷감을 만졌을 때 두께가 두툼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서지로 만든 것 같다. 1966년 이후 법복의 법규상으로는 특별히 소재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실물은 합성섬유로 되어있다.

연구대상의 판·검사 법복들이 각 시대의 유물로 보관 되어 있어 직물의 샘플수거가 어려워 소재의 과학적인 조사가 가능하지 않았다.

) 서지[Serge] : 방모사 또는 견사를 사용한 능직인 천을 말한다. 메리노 양모의 소모사로 위사, 경사 모두 같은 굵기와 밀도의 실로 2/2의 정사문으로 짜여져 있다. 주로 수트나 스포츠 웨어의 소재로 쓰인다. 라사라 교육 개발원(저), 복식사전, 도서출판 라사라, 1992, p.477.

IV. 결 론

우리나라에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지 100년이 넘는 시점에서 사법계의 대표적인 의복인 판·검사의 법복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법복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관복은 단령(團領)의 포(袍)에 사모(紗帽)를 쓰고, 대(帶), 화(靴)를 비롯한 각종 부속품을 갖추며 각 품급에 따라 흉배(胸背)를 달아 구분하였는데, 형조판서(刑曹判書)는 호표(虎豹), 대사헌(大司憲)은 해치(獬豸),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은 운안(雲雁)을 달았다. 영조때에 형조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은 운학(雲鶴)으로 바뀌었고, 고종때에는 형조판서(刑曹判書)가 쌍호(雙虎)를,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은 쌍학(雙鶴)으로 바뀌었다.

둘째, 법복에 관한 법규는 1906년 칙령 제14호 「평리원 이하 각 사법관 급 주사 재판정복 규칙」을 시작으로 해서, 일제시대에는 1911년 칙령 제222호 「조선총독부 재판소 직원의 복제에 관한 건」으로 규정하였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는 1953년 대법원 규칙 제12호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규칙」으로, 1966년 대법원규칙 제516호 「법관 및 법원주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어져 왔다.

셋째, 각 시대 법복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1906년에 공포, 시행된 법복은 조선 시대의 관복 형태를 거의 따르면서 복식의 색상을 통해 그 지위를 구별하였고, 1911년의 조선 총독부 재판소 직원의 법복은 일본의 법복을 그대로 들여왔기에 조선 시대의 관복과는 다른 형태로 기본적인 포의 형태에 어깨와 가슴이 연결된 부분이 일본의 상징인 오동나무잎 모양의 외곽 안에 오동나무꽃과 당초무늬를 넣은 수로 장식하고, 오동나무꽃의 숫자로 그 지위를 구분 하였으며 법모를 썼다. 해방된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특별히 정해진 법복

이 없어서 한복 또는 양복을 자유롭게 입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53년에 공포, 시행된 법복은 일제시대의 법복과 형태가 유사하고 가슴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 모양의 수를 달 것과 옆에 주름대신 무가 달려 있는 점이 차이가 있었다. 이 시대는 무궁화 수의 색상으로 그 지위를 구분하였으며, 법모를 착용하였다.

1966년에는 이전의 법복이 거추장스럽다고 하여 이를 간소화시켜 법복을 제정하였는데, 이 의복은 현재 우리 나라 대학교의 졸업가운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소매만 차이가 있으며, 미국의 법복을 기본으로하여 만들었다. 이 복식은 현재의 법복의 형태를 갖추었다. 법모는 이 시기부터 사라졌다.

넷째, 1973년에 제정된 법복은 1966년에 제정한 법복의 형태와 동일하였고,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여성법복이 추가되었고 남자법관의 넥타이를 자유롭게 했다가 다시 규정하는 등 작은 부분의 변화만 있었다.

다섯째, 실물을 통해서 법규에 규정된 법복의 형태나 색상, 재질들은 물론 바느질이나 각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물의 숫자가 제한되었기에 각 지위별로 복식들이 모두 갖추어진 것은 아니기에 지위를 나타내는 각 부분의 차이점들을 실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지 못하고 법규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정도의 연구에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제국관보, 제3409호, 光武10년 3월 14일자 (음력).
- 조선총독부관보, 제2393호, 大正 9년 8월 2일자.
- 관보, 제846호, 檀紀4286년 3월 5일자, 대한민국 정부공보처 발행.
- 관보, 제4248호, 서기 1966년 1월 17일자, 대한민국 총무처발행.
- 관보, 제6420호, 서기 1973년 4월 10일자, 대한

민국 총무처 발행.

- 관보, 제6450호, 서기 1973년 5월 15일자, 대한
민국 총무처 발행.
- 관보, 제9585호, 서기 1983년 11월 7일자, 대한
민국 총무처 발행.
- 관보, 제10421호, 서기 1986년 8월 23일자, 대한
민국 총무처 발행
- 관보, 제12179호, 서기 1992년 7월 28일, 대한민
국 총무처 발행.
- 라사라 교육 개발원(저), 복식사전, 도서출판라
사라, 1992.
- 법원사편찬위원회,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0.
- 정시채, 한국관료제 도사, 화신출판사, 197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웅진출판사, 1991.
- 김영신, 조선조 보와 흉배의 문양 연구, 홍익대
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김화선, 우리나라 군복사의 고찰, 홍익대산업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영희, 경찰 제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백은희, 조선조 상복의 흉배문양과 그 상징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4.
- 손영희, 우리나라 육군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이지영, 조선시대 흉배문양 변화에 관한 고찰,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임재영, 조선시대의 백관복,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최영숙, 군복식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Marilyn J. Horn, Lois M. Gurel(저), 이화연
의 2인(역), The Second Skin(도서출판 까치,
1990
- 國史大辭典編集委員會, 國史大辭典 第十三卷,
吉川弘文館, 1992. p. 894.

ABSTRACT

A study on the Judge's Robe and the Prosecutor's Robe in Korea.

This thesis is concerned with the study of the court attire, the typical attire of the judicial world in a point of time that more than 10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judicial system.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compiled data of the official uniform or attire in Korea are insufficient, this study placed its signification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with focus on attire.

As a result of studying court attire in Korea, the conclusion was made as follows :

Firstly, Official attires in Yi Dynasty were divided by wearing embroidered insignia on the breast and the back of an official robe according to court rank as well as by wearing Sa-mo (thin silk hat, 紗帽) in wadded clothes of Dan-ryeong(團領) and attaching all sorts of appurtenances(胸背) including bands(帶) and shoes(靴). The Minister of Justice was equipped with Ho-pyo (pattern of tiger and leopard, 虎豹), Dae-sa-heon equipped with Hae-chi (fambulous animal knowing virtue and vices, 獬豸), the mayor of Seoul (Han-sung-bu's Pan-yun) equipped with Un-an (wild geese in clouds, 雲雁). In the era of the King Young-jo, the minister of Justice had no change in its official robe, but the mayor (Pan-yun) of Seoul (Han-sung-bu) had Un-an(wild geese in clouds, 雲雁) changed into Un-hak (cranes in the crowd, 雲鶴). In the King Ko-jong era, the minister of Justice (Pan-suh of Hyung-jo) had Ho-pyo (pattern of tiger and leopard, 虎豹) changed into Ssang-ho (a couple of tigers, 雙

虎), and the mayor of Seoul (Han-sung-bu) had Un-hak (cranes in the crowd, 雲鶴) changed into Ssang-hak (a couple of cranes, 雙鶴) on embroidered insignia on the breast and back of an official rob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ourt attire began with the In-judgement Full-dress Uniform Regulation for official-level Clerical Staff below the ordinary staff, the Issue No. 14 of the Royal Ordinance in 1906, provided as 「the matter concerning the Dress Regulation of the Tribunal staff of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the Issue No. 222 of the Royal Ordinance in 1911, and changed into 「the Regulation on the Dress of Judge, Prosecutor, Attorney and Law Court Clerk」 the Issue No. 12 of the Supreme Court Rule in 1953 afte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since emancipation from the Japanese rule and into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Court Attire of Judge and law Court Clerical Staff」, the Issue No. 516 of the Supreme Court Rule in 1966.

The judicial system in Korea is the system introduced from the foreign country rather than autogenously developed. And it came to

pass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beginning that it took root in Korea, and was not stabilized in harmony with our native tradition. Accordingly, the attire regulation in the judicial system took root in our society by accepting the Japanese attire regulation as it was, and judicial officials have come to wear the court attire similar to that of the Japanese imperialist era due to its influence though Korean independent government was established together with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The more regrettable thing is that the current court attire has maintained the form greatly influenced by the U. S. court attire. Fortunately, as the judicial circles have recently raised their voices for change in the court attire, it has been told that the formation of a meeting for a new court attire has been under way. The birth of the court attire into which our tradition is sublimated is expected.

This study ends up with thinking that the most Korean thing is the most global thing in this era that people in the world are clamoring for globalization